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4. 1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년 5월 31일
2. 회부일자 : 2024년 9월 2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국회(정기회)

□ 제1차 전체회의(2024. 9. 2.)

-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상정, 제안설명, 결산검사결과보고
- 감사원의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조치현황보고
- 검토보고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

☐ 제2차 전체회의(2024. 9. 3.)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

☐ 제3차 전체회의(2024. 9. 4.)

- 부별심사(경제부처)

☐ 제4차 전체회의(2024. 9. 5.)

- 부별심사(경제부처·비경제부처)

☐ 제5차 전체회의(2024. 9. 6.)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 결산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4. 9. 9.)

- 상정,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보고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4. 9. 10.)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계속)

☐ 제3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4. 9. 11.)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계속)

☐ 제4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4. 9. 12.)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계속)

☐ 제5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26.)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계속)
- 원안의결

☐ 제6차 전체회의(2024. 11. 29.)

-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 원안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 상 목)

□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함.

□ 「2023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임.

□ 첫 번째로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임.

총세입 규모는 497조원으로 세입예산액 534조원 보다 37조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총세출 규모는 490조 4,000억원이며, 예산현액 540조 원 중 90.8%가 집행되었음.

결산상 잉여금은 6조 5,000억 원 발생하였고, 다음 연도로의 세출이월액 3조 9,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7,000억원이 발생하였음.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전액 지방교육교부금 정산에 활용하였음.

□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임.

총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자체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60조 4,000억원이증가한 889조 8,000억원임.

□ 세 번째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임.

총수입 573조 9,000억원에서 총지출 610조 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함.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1,000억원이 늘어난 1,092조 5,000억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26조 8,000억원임.

□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결산임.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5조 8,000억원이 늘어난 3,009조 4,000억원임. 국가부채는 국고채 발행잔액 증가, 연금 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3조 5,000억원 증가한 2,439조 5,000억원임. 순자산은 전년 대비 62조 3,000억원 증가한 569조 9,000억원임.

□ 예비비는 저소득층 지원과 재해대책 등을 위해 예산 4조 6,003억원 중 1조 3,091억원이 지출됨.

□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음. 세부 내용은 정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음.

Ⅲ.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요지

(보고자 : 감사원장 최 재 해)

-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결산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및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해서 매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정리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 5월 30일 국회에 제출해드린바 있음.

-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음.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97조원, 세
출결산액은 490조 4,000억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조 9,000억원을
제외한 세잉여금은 2조 7,000억원임. 고용보험기금등 68개 기금
의 수입·지출결산액은 각각 889조 8,000억원임.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적자폭
이 27조 8,000억원 감소하였고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함.

-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결과임.

검사 결과, 자산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
하는 등 총 8조 9,000억원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부채와 관련해서는

미래지출 예상액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등 총 8,000억원의 오류가 있었음.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자산은 3,009조 4,000억원, 부채는 2,439조 5,000억원임.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7,570억원이 과대계상되었고 물품은 2,050억원이 과대계상되었음.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국유재산은 1,369조 1,000억원, 물품은 15조 9,000억원임.

2023회계연도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1,092조 5,000억원으로서 전년도 1,033조 4,000억원에서 59조 1,000억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9%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음. 그 밖에 국가채권은 514조 2,000억원, 정부보증채무는 10조 5000억원이었음.

□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결과임.

기획재정부 등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 결과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한 사례 그리고 성과지표의 실적치를 계획서와 다르게 측정한 사례 등 총 24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음.

□ 끝으로 감사원 감사활동 결과임.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에 145개 기관에 대한 결산검사 또는 기관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93개 사항의 성과감사, 특정감사와 국민제안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결과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보고서에 수록해서 국회에 제출하였음.

또한, 2023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전관 특혜실태 등 7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음.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결산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감사원 감사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음.

IV.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조치현황보고의 요지

(보고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 상 목)

□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 여러분!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23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음.

□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

원 검사결과는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으로 감사원이 해당 기관들에 처분을 요구한 203건 중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91.1%에 해당하는 185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8.9%인 18건은 조치 중임.

조치 중인 18건을 내용별로 보면 변상판정이 1건이고 징계요구가 13건 20명이고 시정요구가 4건임. 조치 중인 사안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결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 업무가 더욱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음.

-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2023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정 대 영)

1.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가. 결산 개요

□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수입은 573.9조원으로 전년 대비 43.9조원($\Delta 7.1\%$) 감소하였고, 이는 주로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것임.

총지출은 610.7조원으로 전년 대비 71.7조원($\Delta 10.6\%$)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2년에 코로나19에 따른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던 사실에 주로 기인함.

[표 1] 2023회계연도 총수입 및 총지출 결산

(단위 : 조원)

구 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대비 (C-B)	
I. 총수입	617.8	625.7	573.9	$\Delta 51.8$	$\Delta 43.9$
1. 국 세	395.9	400.5	344.1	$\Delta 56.4$	$\Delta 51.9$
2. 세외수입	30.8	25.0	28.5	3.5	$\Delta 2.3$
3. 기 금	190.8	200.3	201.1	0.8	10.3
※ 세입예산외 ¹⁾	0.3	-	0.3	0.3	$\Delta 0.0$
II. 총지출	682.4	638.7	610.7	$\Delta 28.0$	$\Delta 71.7$
1. 일반회계	379.9	369.4	343.5	$\Delta 25.9$	$\Delta 36.4$
2. 특별회계	59.7	71.6	69.6	$\Delta 2.0$	10.0
3. 기 금	231.2	197.7	196.5	$\Delta 1.1$	$\Delta 34.6$
※ 세출예산외 ²⁾	11.6	-	1.0	1.0	$\Delta 10.6$

주 1) 국고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

2)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6.8조원 적자(GDP 대비 △1.6%)를 기록하였음. 이는 전년 실적 대비 27.8조원 개선되었으나 예산 대비로는 23.7조원 악화된 것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87.0조원 적자(GDP 대비 △3.9%)를 기록하였음. 이는 전년 실적 대비 30.0조원 개선되었으나 예산 대비로는 28.8조원 악화된 것임.

[표 2] 2023회계연도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I.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64.6 (△3.0)	△13.1 (△0.6)	△36.8 (△1.6)	△23.7 (△1.1)	27.8 (1.3)
II. 사회보장성기금수지 (GDP 대비)	52.5 (2.4)	45.1 (2.0)	50.3 (2.2)	5.1 (0.2)	△2.2 (△0.2)
III.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117.0 (△5.4)	△58.2 (△2.6)	△87.0 (△3.9)	△28.8 (△1.3)	30.0 (1.5)

주) 명목 GDP는 2024년 3월 5일 한국은행 발표 기준으로, 2022년 2,161.8조원, 2023년 2,236.3조원(잠정)임¹⁾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1,126.7조원으로 GDP 대비 50.4%를 기록하였음. 이는 예산보다 7.6조원 적은 것이나 전년 대비로는 59.0조원 증가한 것임.

1) 2024.6.5.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기준년 변경(2015→2020년)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23년 기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2023년 △3.9%에서 △3.6%로, 국가채무 비율은 50.4%에서 46.9%로 변동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국회에 제출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2015년 통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본문의 내용도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이러한 증가는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1,091.1조원)가 전년 대비 59.6조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함.

[표 3]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 국가채무(A+B, 잠정)	1,067.4	1,134.4	1,126.7	△7.6	59.0
(GDP 대비, %)	(49.4)	(50.4)	(50.4)	(△0.1)	(1.0)
○ 중앙정부 채무(A)	1,033.4	1,101.7	1,092.5	△9.2	59.1
■ 국 채	1,031.5	1,100.3	1,091.1	△9.2	59.6
- 국고채권	937.5	999.0	998.0	△1.0	60.5
- 국민주택채권	82.2	86.8	81.6	△5.2	△0.5
- 외평채권(외화)	11.8	14.5	11.5	△3.1	△0.3
■ 차입금	1.9	1.2	1.2	-	△0.7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2	0.2	-	0.1
○ 지방정부 순채무(B)	33.9	32.6	34.2	1.6	0.3

주 1) GDP 대비 채무비율은 산출시기 마다 GDP 전망치가 달라 변동이 있음
 2) 지방정부순채무는 잠정치(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 사용)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보면,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채무 726.4조원,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채무 400.3조원으로 구성됨.

적자성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가 660.1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융성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251.0조원을 차지함.

[표 4]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의 성질별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 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 국가채무(A+B)	1,067.4	1,134.4	1,126.7	△7.6	59.4
○ 적자성 채무(A) (구성비)	676.0 (63.3)	721.3 (63.6)	726.4 (64.5)	5.1 (0.9)	47.4 (1.2)
- 일반회계적자보전	605.8	656.6	660.1	3.5	54.3
- 공적자금국채전환 등	70.1	64.7	66.3	1.6	△3.8
○ 금융성 채무(B) (구성비)	391.3 (36.7)	413.0 (36.4)	400.3 (35.5)	△12.7 (△0.9)	9.0 (△1.2)
- 외환시장 안정	265.7	278.7	251.0	△27.7	△14.7
- 서민주거 안정 등	125.6	134.4	149.4	15.0	23.8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세입·세출 결산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2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총세입은 497.0조원으로 전년 대비 76.9조원 감소하고 예산 대비 37.0조원 적은 규모임.

이 중 일반회계 총세입은 407.9조원으로 전년 대비 86.0조원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 총세입은 89.0조원으로 전년 대비 8.9조원 증가하였음.

[표 5] 2023회계연도 회계별 세입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2022 결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합 계	573.9	534.0	497.0	△37.0	△76.9
일반회계	493.9	446.2	407.9	△38.3	△86.0
특별회계	80.1	87.7	89.0	1.3	8.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성질별 세입 징수실적을 보면,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51.9조원 감소하였고 예산 대비 56.4조원 미달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2.9조원으로 전년 대비 25.1조원 감소하였으나 예산 대비 19.4조원 초과하였음.

[표 6] 2023회계연도 성질별 세입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국세수입			세외수입		
	2022 결산	2023		2022 결산	2023	
		예산	결산		예산	결산
합 계	395.9	400.5	344.1	178.0	133.5	152.9
일반회계	385.2	390.3	333.9	108.7	56.0	74.0
특별회계	10.8	10.2	10.2	69.3	77.5	78.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총세출은 490.4조원으로 전년 대비 69.3조원 감소하였고 예산현액보다 49.5조원 적었음.

일반회계 총세출이 405.9조원으로 전년 대비 79.2조원 감소한 데 비해 특별회계 총세출은 84.5조원으로 전년 대비 9.8조원 증가하였음.

[표 7] 2023회계연도 회계별 세출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2022 결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액	예산현액 (B)	결산 (C)	예산현액 대비 (C-B)	
합 계	559.7	533.9	540.0	490.4	△49.5	△69.3
일반회계	485.0	446.2	449.1	405.9	△43.2	△79.2
특별회계	74.7	87.7	90.9	84.5	△6.4	9.8

주) 예산현액(B)은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및 초과지출 승인액 등을 합한 금액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6.5조원(총세입 497.0조원에서 총세출 490.4조원 차감)이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이 발생하였음.

[표 8]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조원)

구 분	총세입 결산 (A)	총세출 결산 (B)	결산상잉여금 (A-B)	이월액 (C)	세계잉여금 (A-B-C)
합 계	497.0	490.4	6.5	3.9	2.7
일반회계	407.9	405.9	2.0	2.0	0.04
특별회계	89.0	84.5	4.5	1.9	2.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기금 결산

- 2023회계연도 기금 전체 68개의 수입·지출액은 889.8조원으로 전년 대비 60.4조원이 증가하였음.

기금 수입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정부내부수입(248.1조원), 여유자금회수(243.8조원), 자체수입(214.3조원), 차입금(183.5조원) 순으로 규모가 크고,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기금 지출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여유자금운용(273.4조원), 정부내부지출(268.9조원), 사업비(178.7조원) 등의 순으로 규모가 크고, 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표 9]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2 결산 (A)	2023			수정계획 대비 (D-C)	전년 대비 (D-A)
			계획		결산 (D)		
			당초(B)	수정(C)			
수 입	자체수입	203.0	212.6	211.7	214.3	2.67	11.3
	정부내부수입	236.3	262.6	275.1	248.1	△27.0	11.7
	차입금	178.7	191.7	192.9	183.5	△9.4	4.8
	여유자금회수	211.3	226.2	240.9	243.8	2.9	32.5
합 계		829.4	893.1	920.6	889.8	△30.8	60.4
지 출	사업비	214.5	180.9	185.5	178.7	△6.9	△35.9
	기금운영비	2.8	2.9	3.0	2.9	△0.1	0.1
	정부내부지출	230.3	257.7	280.0	268.9	△11.2	38.6
	차입금원금상환	111.0	139.1	142.2	138.8	△3.3	28.0
	차입금이자상환	23.8	27.6	28.1	26.9	△1.1	3.2
	여유자금운용	246.9	285.0	281.7	273.4	△8.3	26.5

자료: 기획재정부

□ 기금 유형별 수입·지출 결산을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계정성기금의 수입·지출규모가 440조 5,447억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7,499억원 증가하였고,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험성기금의 수입·지출규모가 268조 8,556억원으로 전년보다 18조 1,601억원이 증가하였음.

사업성기금의 수입·지출규모는 149조 7,304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조 9,659억원 감소하였고, 금융성기금의 수입·지출규모는 30조 6,274억원으로 전년 대비 4,550억원 증가하였음.

□ 또한 기금 수정계획 대비 결산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성기금은 수정계획 대비 결산규모가 28조 2,516억원 초과하였던 반면, 계정성기금은 27조 4,226억원, 사업성기금은 29조 2,392억원, 금융성기금은 2조 3,987억원이 각각 수정계획에 미달하였음.

[표 10] 2023회계연도 기금 유형별 수입·지출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 실적 (A)	2023				전년 대비 (D-A)
		계 획		결 산 (D)	수정 계획 대비 (D-C)	
		당초(B)	수정(C)			
합 계	8,293,590	8,931,295	9,205,671	8,897,582	△308,089	603,991
■ 사회보험성기금(6개)	2,506,955	2,403,795	2,406,040	2,688,556	282,516	181,601
■ 계정성기금(5개)	3,507,948	4,409,626	4,679,674	4,405,447	△274,226	897,499
■ 금융성기금(8개)	301,724	330,261	330,261	306,274	△23,987	4,550
■ 사업성기금(49개)	1,976,963	1,787,613	1,789,696	1,497,304	△292,392	△479,659

자료: 기획재정부

2.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검토

가. 2023년 재정운용의 경제적 성과

- 2023년 경제성장·민간소비 및 물가안정 지표는 당초 전망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나, 취업자 증가폭 및 경상수지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운용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23년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세계 교역량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을 맞이하였으며, 이에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것임.

2022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당시 거시경제지표 전망치와 실제 시현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실질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증가율 등은 전망치를 하회하였으나, 취업자 수와 경상수지 등은 전망치를 상회하였음.

[표 11] 2023년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및 실제 통계 비교

구 분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2023년 주요 거시경제전망(A)	2023년 실제 통계 (B)	차이(B-A)
경상성장률(%)	4.0	3.4	△0.6%p
실질성장률(%)	1.6	1.4	△0.2%p
민간소비증가율(%)	2.5	1.8	△0.7%p
소비자물가상승률(%)	3.5	3.6	+0.1%p
취업자증감(만명)	10	32.7	+22.7
경상수지(억불)	210	355	+145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12.)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다만 정부는 2023년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을 예상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으나, 재정지출의 성장기여도가 상반기에 음(-)의 값으로 나타나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계절조정, 실질)를 보면, 정부기여도가 1분기 $\Delta 0.3\%p$, 2분기 $\Delta 0.2\%p$ 등 음의 값으로 나타났고, 3분기 $0.3\%p$, 4분기 $0.2\%p$ 등 하반기에 비로소 양의 값으로 나타나, 재정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효과가 상반기에 적정하게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움.

[표 12] 분기별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단위: %p)

구 분	2023.1/4	2023.2/4	2023.3/4	2023.4/4	2024.1/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0.4	0.6	0.8	0.5	1.3
민 간	0.6	0.8	0.4	0.4	1.2
정 부	$\Delta 0.3$	$\Delta 0.2$	0.3	0.2	0.1

자료: 통계청 KOSIS, 지출항목 성장기여도(계절조정, 실질, 분기), 2024.6.

- 이처럼 효과가 저조했던 것은 신속집행 대상사업 중 상당수가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거나 수요가 발생해야 지출이 가능한 사업 등 그 성질상 신속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재정집행의 효과가 민간에 적시에 전달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 하겠음.

예컨대, 기초연금 지급(18.5조원), 의료급여(9.1조원), 생계급여(6.0조원) 등 지자체에 교부되는 법정 의무지출사업은 지자체에서 매달 수급요건 등이 고려되어 지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상반기 신속집행을 하더

라도 실제 지출까지 시차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보조금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효과만 나타난다 할 것임.

그리고 주택자금·전세자금 융자(10.4조원), 전세임대 융자(4.2조원) 등은 시장의 수요가 있어야 지출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독려할 재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기흐름의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전제로 신속집행을 추진해온 재정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신속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신속집행의 전제와 달리 실제 경기가 상고하저(上高下低)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재정의 신속집행이 오히려 경기변동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

예컨대, 2022년의 경우 1분기 경제성장률이 0.7%, 2분기는 0.8%였으나, 3분기 0.2%, 4분기 △0.3% 등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경제활동이 떨어진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3.0%로 설정하고 추진하여 1.4%p를 초과달성하였음.

한편 신속집행을 위한 상반기 재원조달을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량이 증가하여 조달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2023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 등을 위해 일시차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자비용도 급증하였음.²⁾

2) 차입실적(누계): 2021년 36.4조원, 2022년 50.5조원, 2023년 162.1조원

나. 세입결손 현황 및 정부 대응방안 검토

- 2023년에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세입결손(56.4조원)이 발생하였고, 세수부족 문제가 2024년에도 지속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정부는 그 원인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국세수입은 344.1조원이 수납되어 예산 400.5조원 대비 56.4조원(△14.1%)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 6월 기준 국세수입 누계액은 16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조원 감소하는 등 여전히 세수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세수입 오차율(본예산 기준)은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로서 세수오차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고 변동폭이 큰 상황이므로, 세수오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편 정부는 추경을 통한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 통상적 불용 등을 통하여 대응하였는데,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충분한 세입재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재정지출 여력에도 제한이 가해져 역대 최대 규모의 불용(45.7조원)이 발생하였음.

정부는 2023년 9월, 세입결손에 대하여 세입경정 추경을 통한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 등을 활용하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대응하였으나, 재정지출 여력에도 제한이 생겨 역대 최대 규모의 불용(45.7조원)이 발생하였음.

다만 정부는 결산상 불용액을 ① 세입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재원 미교부(18.6조원), ② 내부거래(16.4조원) 및 ③ 사실상 불용(10.8조원)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실상 불용 규모를 고려할 때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불용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세입결손 대응과정에서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저하, 미래 재정부담의 증가, 「국가재정법」 등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 사례 등이 있었음.

우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동안 예산액 기준으로 모두 교부하고 사후정산하는 형태로 운용되었는데, 중앙정부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금번에 대규모 재원을 사전에 미교부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향후 지방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배정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된 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을 위반하는 문제도 발생하였음.³⁾

다음으로 내부거래 불용(16.4조원)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 미상환(8.6조원) 등은 현재의 상환의무를 미래로 연기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내부거래가 회계·기금 간 중복계상되는 것으로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정부 측 설명과 달리 미래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와 더불어 대규모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조기상환(14.4조원) 과정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 규모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향후 외국환평형기금을 외환시장 안정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사실상의 불용(10.8조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출소요 발생 감소에 따른 예비비 불용(3.3조원)을 제외하면 통상적인 사업비 불용 규모(7.5조원)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4년에 크게 증액편성된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각 부처의 재해대책비 예산 중 상당 부분이 2023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⁴⁾ 2023년 목적예비비로 집행했어야 할 재해복구 의무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은 특별교부금 총액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에 각각 60%, 30%, 10%씩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중 국가시책 특별교부금만 예산 대비 전액 교부하고 나머지 특별교부금은 예산 대비 감액 교부함에 따라 교부비율이 68.6%, 23.5%, 7.8%로 나타나 법정비율이 준수되지 않았음.

4)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재난대책비 예산 6,000억원 중 5,400억원, 환경부의 2024년 하천재해대책

중 일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2024년으로 이연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13]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처	세부사업명	2023 예산(A)	2024 예산(B)	증액분(B-A)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보조)	150,035	600,040	450,005
환경부	하천재해대책비	-	250,000	250,000
	재해대책비	-	50,000	50,000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비	200,000	280,000	80,000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20,000	100,000	80,000
해양수산부	양식 등 재해대책비	16,346	50,000	33,654
계		386,381	1,330,040	943,659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비 예산 2,500억원 중 2,300억원은 각각 2023년 7~8월 중앙합동조사 및 2023년 9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된 수해 및 태풍 복구계획에 기반하여 2023년 재난대책비 등으로 지원되지 않은 자금을 2024년에 지원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

다. 재정수입 결산 검토

- 첫째, 2023년과 2024년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⁵⁾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당해연도의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국세감면율 추이를 보면, 2022년 실적은 13.0%인데 반해, 2023년과 2024년 전망치는 각각 15.8%, 2024년 16.3%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3년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출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3%를 1.5%p, 2024년에도 법정한도 잠정치인 14.6%를 1.7%p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둘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비율이 2021년 75.0%, 2022년 87.5%, 2023년 85.7%로 나타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

5)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③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성이 저하된 상황이므로,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에 따르면,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적시성 및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2021~2023년 동안 매년 1건만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비율은 2021년 75.0%, 2022년 87.5%, 2023년 85.7%로 각각 나타나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그러나 2020~2023년까지 예비타당성평가를 받은 6건 중 4건이 “타당성 낮음”으로 나타나 평가를 거친 경우 과도한 조세감면을 억제하는데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면제요건 구체화 및 엄격한 적용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하겠음.

□ 셋째,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징수 관행 등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교육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⁶⁾ 등 연례적으로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세입과목으로 편성하지 않거나, 세외수입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편성⁷⁾ 또는 과다편성⁸⁾하는 경우가

6) 2023년 수납액 641억원

있으므로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예산편성이 요구됨.

위약금과 가산금 등 일부 수입과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상당히 저조하므로, 각 부처는 수납실적 저조사유를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의 위약금(△395억원) 등 일부 수입과목에서는 수납액보다 과오납금 반환규모가 커 수납액이 음(-)의 값을 가지고 있고 해당 과오납금이 어느 세입과목에서 추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세입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세입과목의 당해연도 수납된 금액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되, 부족한 금액은 세출 예산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7) 보건복지부의 기타경상이전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조달청의 기타영업외잡수익, 경찰청 과태료 등

8) 기획재정부의 기후대응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외국환평형기금 국공채수입 등

라. 대규모 재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사례

- 2023년에는 세수결손으로 인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례와 같이 집행과정에서 대규모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유발된 경우들이 있었으므로, 향후 정부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첫째,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사업은 2022년말 기준 6,000억원 이상의 잔액이 의료급여기금에 적립되어 집행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 합리적인 추계를 하였다면 불용예상 재원을 다른 용도로 편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임.

둘째,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2023년 6,563억원 등 매년 수천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환경부의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환경부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형태로 집행되는데,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 교부 및 위탁으로 인하여 2023년말 한국환경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잔액이 9,680억원에 달하고 있음.

넷째,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혁신어촌조성) 사업은 2023년 5,491억원 등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이 실집행단계에서 이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연례적으로 지자체 및 수탁기관으로 교부되는 비효율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에 3,440억원을 전액 출연하였고, 이 중 432억원만 실집행되고 3,008억원이 미집행된 문제가 있었음.

여섯째,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고용보험기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보험기금)’ 등 5개 사업은 사업수요를 과다추계하여 2023년에만 합계 1조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불용이 야기되었고, 이러한 사례가 2년 연속 반복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마. 특별회계 및 기금별 재원의 불균형 및 개선방안

-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의 수입재원을 보유하여 독자적인 지출에 충당하므로 수입-지출 간 균형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보유재원이 과다하여 비효율적인 집행이 나타나거나 수입구조가 미약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조속한 개선이 요구됨.

첫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재원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2023년에는 기금사업비의 1.5배 이상인 약 2.7조원이 적립되어 있으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을 확대하는 한편, 구조적인 수지 불균형 해소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 기금의 사업비 지출은 최근 3년 평균 약 1.7조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여유자금 규모(연중 평잔)는 2021년 0.9조원, 2022년 1.2조원, 2023년 1.7조원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잔액도 2023년 결산 기준 9,600억원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을 확대하는 등 수입-지출 불균형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최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차입을 통한 외부재원 조달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안정적인 세원 확보 및 세출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2023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3조원으로, 동 회계는 매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규모는 2022년 0.4조원에서 2023년 1.2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2.2조원을 예수할 계획임.

이처럼 최근 들어 수입-지출 불균형에 따라 차입을 통한 외부재원 조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회계 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되었던 융자사업의 거치기간 종료에 따른 부실률 증가로 재원부족 문제가 향후 더욱 악화될 전망이므로, 신규 재원 발굴 등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

동 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로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2023년 기준 기금의 순자산은 △6.0조원으로서 음(-)의 값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5.2조원 대비 0.8조원 적자가 심화된 것임.

또한 동 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잔액은 20.6조원으로 2023년 기금사업비(4.0조원)의 5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시행되었던 각종 대출의 거치기간(2년)이 도래함에 따라 부실률 또한 2021년 1.6%에서 2023년 10.0%로 급증하고 있음.

넷째, 국민건강증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은 자산보다 부채 규모가 더 큰 자본잠식 상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기금사업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은 모두 재무결산상 순자산이 음(-)의 값을 지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으며, 2022년 대비 자본잠식 상태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이들 기금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입재원 발굴 및 현행 지출사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하겠음.

[표 14] 3개 기금의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순자산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국민건강증진기금	14,940	18,826	39,787	46,125	△24,847	△27,299
방송통신발전기금	5,800	4,429	15,074	16,859	△9,274	△12,430
정보통신진흥기금	3,082	2,068	24,760	28,936	△21,678	△26,869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회계연도 기금 재무제표

3. 주요 유형별·주제별 검토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잔액의 미반납에 대한 관리 강화

- 2023년 지자체 보조사업의 잔액 반납 현황을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1조 140억원이 연말까지 반납되지 않았고, 이 중 1,556억원은 2022년 이전에 징수결정되었음에도 반납되지 않는 등 보조사업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3월까지 정산을 마무리할 의무가 보조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차년도 중에 보조금 잔액 반납이 완료되어야 함.

그러나 2023년까지 잔액 반납 의무가 있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반납 현황을 보면, 23개 부처 총 1조 140억원이 연말까지 반납되지 않아 미수납처리되었으며,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5,552억원, 질병관리청 1,907억원, 환경부 664억원 등의 순으로 미수납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2023년 징수결정액 3조 3,528억원 중 7,212억원(17.7%)은 과거연도 미반납에 대한 재징수 결정액으로, 이 중 1,556억원은 2023년말까지 반납이 완료되지 못하였음.

- 주된 미반납 사유는 ‘지자체 예산 미편성’으로, 지자체는 추경을 편성하지 못해 예산에 보조금 반납액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

으나, 통상적으로 연중 여러 차례 추경이 편성되고 있고 연말까지 추경을 편성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고 하겠음.

보조금 미반납의 주된 사유는 '지자체 예산 미편성(1조 1억원)'으로, 2023년 전체 미수납액 1조 14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지자체는 정산된 보조금 잔액을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해야 국고 반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가예산 확정분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에 추경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연중 필요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는 등 통상적으로 매년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의 보조사업 잔액 미반납 관행은 추경편성이라는 구조에 그 원인에 있기보다는 반납 의지 부족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대규모 재원이 법률에 반하여 국고로 수납되지 못함에 따라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각 부처 차원의 조치는 개별사업별 반납 독려 외 별다른 행위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자체 보조금 잔액 반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미반납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겠음.

1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재원이 국고로 수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는 지자체의 미반납 사유인 '지자체 예산 미편성'을

그대로 수궁하면서 개별사업별로 반납을 독려할 계획만 밝히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지자체 예산 미편성’이 아닌 다른 사유로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잔액 미반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공공기관 결산 검토

□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은 총 347개로,⁹⁾ 전체 수입은 908.0조원, 전체 지출은 907.4조원 규모이고, 자산은 1,096.3조원, 부채는 709.0조원으로 부채비율은 183.0% 수준이며, 2023년 공공기관 결산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위변제 금액이나 차입금 증가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들의 사례가 있었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개선과 보증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출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공사의 대위변제 금액은 2023년 4조 9,229억원, 2024년 4월말 기준으로 1조 9,967억원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및 이자부담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¹⁰⁾ 2023년 총 이자비용은 2.13조원에 이르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중장기 부채비율 목표 (2027년 208%)달성을 위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2022년 25조 2,977억원에서 2023년 3조 2,492억원으로 개선되었으나, 이자역마진이 2023년 △2조 7,345억

9) 2024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기관들이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기관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정해제되어 공공기관 수는 전년 대비 20개 감소한 327개가 되었음.

10) 부채는 2019년 127조원에서 2023년 153조원, 이자부담부채는 2019년 65.9조원에서 2023년 88.3조원으로 증가하였음.

3,6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함.

- 둘째,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계획변경 또는 사업관리 부실 등 회계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계획액이 감축된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의 재원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증액하여 집행함으로써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야기하였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 제주헬스케어타운·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이 사업관리 부실로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2022년 이후 지연된 공공형 에너지화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2020년 12월 준공 및 개장하였으나 2024년 6월까지 사기업의 유치실적은 1건이고 2024년 6월 기준 공실률이 86.6%에 달하여 당초 조성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기관의 미래를 위한 준비 강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등 기관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음.

한국마사회의 경우, 마권 총발매액과 당기순이익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경마산업의 실적이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비용절감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예술의전당의 경우,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설립목적에 맞추어 현재 대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운영을 기획 공연·음악·전시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이 중에서도 라이선스·인기장르 대비 창작 및 순수예술장르의 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 법률상 근거 없이 2021년부터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시행하면서 세입·세출외로 녹색프리미엄 수익을 이용하여 2024년부터 기업 재생에너지펀드를 결성·운용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수익금 및 펀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탄소중립 지원에 투입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 사업출연금 정산 의무화 필요

- 사업출연금은 연구개발출연금과 달리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법령이 부재하여 상당수의 출연사업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정산 및 반납 없이 이월되거나 피출연기관에 적립되고 있음.

「국가재정법」상 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개발 목적 여부에 따라 일반출연금(350목)과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구분되며, 일반출연금 중 사업출연금(350-02)은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그런데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처리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통일된 근거 법률이 부재하여 피출연기관이 사업출연금 집행잔액을 정산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의 투명성 원칙에 비추어볼 때, 모든 재정활동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것이며 사업출연금만 그 예외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국가재정법」제16조제4호는 예산의 원칙 중 하나로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정이 투입된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그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 투명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비록 정산에 대한 일반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재정활동과 달리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유나 별도의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모든 재정활동과 동일하게 정산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출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예산 집행지침의 취지를 감안할 때, 집행이 완료된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해야 할 것임.

예산집행지침에서는 출연금의 정산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되,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 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율하여,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출연금 집행 시 투명성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음.

나아가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 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율하고 있는데, 이처럼 기관운영출연금에 대하여만 단서조항을 달아 예외적으로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율한 취지는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출연금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할 수 없고 정산 및 반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산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사례를 고려하여,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도 정산 및 반납 등 사후관리 원칙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 각기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사업출연금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음.

연구개발출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규율이 정립되어 있으나, 사업출연금 등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불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도 정산 및 반납 등 사후관리 원칙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모든 사업출연금은 정산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재정원칙을 정립하여 출연금을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라. 국민연금급여 과소추계에 따른 국가재정 규모의 부정확성

-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은 2년 연속 약 3조원 규모의 예산을 과소계상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총지출 규모 등 적정수준의 재정총량을 도출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국민연금급여지급 규모에 대해 보다 정확한 추계가 요구됨.

국민연금기금 소관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36.2조원이 편성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집행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9조원을 증액하여 39.1조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도 30.6조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3.5조원 증액된 34.1조원이 집행되었음.

보건복지부는 높은 물가상승률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들로 인해 계획보다 급여액이 증가하여 재원을 추가로 조달하였다는 입장이나, 계획액 대비 집행액 오차율이 2020년 3.6%, 2021년 0.1%로 낮게 나타나던 상황에서 2022년 11.1%, 2023년 7.8%로 최근 2년 사이 오차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동 사업은 과소추계로 인해 큰 규모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규모에 변동이 발생하여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재정 총 규모가 과소추계 됨으로써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목표로 할 적정 재정규모를 산출하는 데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예컨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656.9조원,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제시하였는데, 만약 2024년에도 과거와 같이 약 3조원의 과소추계 경향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실제 총지출 규모는 659.9조원, 총지출 증가율은 3.3%가 되어 총지출 증가율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값보다 0.5%p 상승하게 됨.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급여지급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여 오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마. 비효율적인 집행 등

- 첫째, 일부 부처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하여 투입된 재정이 낭비되거나,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행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제작한 방사성제논탐지 장비가 연구부정행위로 인하여 그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2023년 내부감사로 발견하여 다른 유사장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가용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장비성능검사 관련 예산 10억 9,0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방비 100%로 추진해야 할 성격의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고보조금 2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가유산청은 전용을 통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인 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약 6억원에 달하는 위탁용역계약을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하였음.

- 둘째, 사업대상 선정의 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성·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신뢰가 저해된 경우, 사업구조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음.

통계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위 행정규칙인 고시를 제정하여, 특정 기관이 통계청의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 장기간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시를 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에 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마음건강 상담·검사 진료비 지원’ 사업을 종료하였는데, 해당 사실이 수혜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인지되지 못해 국가지원을 기대했던 소방관들이 자부담으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국가정책의 신뢰도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음.

환경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친환경설비투자’ 사업추진 과정에서 용자대상을 선정하였음에도 수입재원 부족을 이유로 일부 예산의 집행을 차년도로 연기하여 연내 용자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 사업대상자들의 자금운용계획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음.

금융위원회의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사업은 고정된 목표금리와 금융기관이 설정한 대출금리의 차이를 모두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금융기관이 금리를 높게 설정할수록 금융기관의 이익이 커지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함.

바. 국가재정법 위반 등

- 첫째,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감소로 3개 세부사업에서 총 441억원의 재원 없는 이월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국가재정법」상 이월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함.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의 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에 한하여 가능함.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 급감에 따라 수입재원이 부족하게 되자,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174억원)’, ‘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101억원)’, ‘친환경설비투자(166억원)’ 등 3개 사업에서 총 441억원을 이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용처리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함.

- 둘째, 정부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청년인턴 사업을 연중 신규 추진하기 위하여 전용 등을 통해 46개 부처에서 약 225억원을 조달하였으나, 이는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을 금지하는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제1호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전용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2023년 1월 46개 부처에 총 2,000명의 청년인턴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전용 등을 통해 약 225억원의 예산을 조달하여 연중 청년인턴 채용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음.

청년들에게 행정기관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인턴 사업의 효과를 긍정한다 하더라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전용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범사업을 통하여 성과를 검증한 후 차년도 예산에 본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차입하였는데, 이는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차입금 한도액에 관한 내용은 2023년도 예산총칙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중 기금운용 계획변경을 통해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차입하였음.

7. 재정제도 개선과제

- 첫째, 예비비는 사업내용이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차년도 결산 시까지 그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통제가 어려우므로,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변경과 같이 분기별로 그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 없이 총액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정부의 예비비 집행내역은 예비비총괄명세서가 국회에 제출되는 차년도 5월 31일에 공개되어 이후 국회의 사후승인을 얻게 됨.

이처럼 예비비 집행내역이 차년도 5월에 공개됨에 따라 예비비 집행 당시에는 부적절한 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문제제기를 할 수 없고, 차년도에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예비비의 지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국회의 견제가 필요하고, 집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연중에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의 국회 제출’ 제도가 이미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비비 또한 연중에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둘째, 수시배정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수시배정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고, 수시배정 지정내역 및 그 사유를 연중에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수시배정’이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는 동 제도는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 취지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함.

현재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예산집행지침에 규율되어 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상 수시배정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는 동시에 수시배정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위임규정을 두고 하위법령에 명확히 선정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집행과정에서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과 수시배정 지정 사유를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정부가 국회가 예산을 심의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 타당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셋째, 국유재산 현물출자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효과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현물출자를 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관리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금출자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의 심의대상이 되나, 현물출자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 정부는 현물출자 시 사전에 국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후에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9호에 따라 현물출자명세서를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물출자는 지분 취득을 전제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특정 기관에 이전하여 정부출자기관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출자 대상이 현물인 점 외에 현금출자와 자본확충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그 규모가 연간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금출자와 달리 국회가 출자의 필요성이나 출자 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특히 현행 「국유재산법」 제60조에 명시된 현물출자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물출자 시행에 관한 정부의 재량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물출자에 관한 국회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내용은 생략)

VI.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VII.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심사보고자 : 구 자 근 위원)

1. 심사경과

□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 안건 등의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 및 부대의견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 심사보고 요지

□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소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2,31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 시정요구사항의 세부유형을 말씀드리면,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08건, 제도개선 1,330건을 각각 채택하였으며, 이 중 유형을 중복하여 채택한 요구는 68건임.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만한 기관운영 사례 점검 및 관련자 징계 요구,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정부 대응방안에 대한 시정 요구,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의 요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신속한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있음.

□ 다음, 부대의견은 정부는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등 총 34건을 채택하였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

VIII. 토론요지

생 략

IX. 심사결과

원안의결

X. 시정요구(안), 부대의견(안) 및 감사요구(안) 등

1. 시정요구(안)

【붙임 2】

2. 부대의견(안) : 1건

연번	부 대 의 견
1	○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예비비가 본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차년도 결산시 그러한 규모의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했던 사유를 외교통일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3. 감사요구(안) : 없음

【붙임 1】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총괄표**

1. 연도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시 정 요 구(안)	22	27	26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시정요구는 없음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내역

□ 시정요구(안) : 26 건

(단위: 건)

구 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합 계
건수	-	-	4	15	7	-	26

※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유형이 적용된 경우를 의미함(예 : 시정 및 제도개선)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시정요구는 없음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위원회별 시정요구(안)

현황

(단위: 건)

구 분	시정요구유형						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국 회 운 영	-	-	2	1	-	-	3
법 제 사 법	-	-	-	1	-	-	1
정 무	-	-	-	4	-	-	4
기 획 재 정	-	-	-	2	2	-	4
교 육	-	-	-	-	1	-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	-	-	1	-	1
외 교 통 일	-	-	1	1	-	-	2
국 방	-	-	-	-	-	-	-
행 정 안 전	-	-	-	-	-	-	-
문 화 체 육 관 광	-	-	1	1	-	-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	-	3	3	-	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	-	1	-	-	1
보 건 복 지	-	-	-	-	-	-	-
환 경 노 동	-	-	-	-	-	-	-
국 토 교 통	-	-	-	-	-	-	-
여 성 가 족	-	-	-	1	-	-	1
공 통	-	-	-	-	-	-	-
합 계	-	-	4	15	7	-	26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부처별 시정요구(안)

현황

(단위: 건)

위원회	부처명	시정요구유형						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국회운영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	-	-	-	-	-	-
	대통령경호처	-	-	2	1	-	-	3
	국회	-	-	-	-	-	-	-
	국가인권위원회	-	-	-	-	-	-	-
	소 계	-	-	2	1	-	-	3
법제사법	법무부	-	-	-	1	-	-	1
	법제처	-	-	-	-	-	-	-
	감사원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	-	-
	헌법재판소	-	-	-	-	-	-	-
	대법원	-	-	-	-	-	-	-
	소 계	-	-	-	1	-	-	1
정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	-	4	-	-	4
	국가보훈부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	-	-	-	-	-	-
	금융위원회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	-	-
	소 계	-	-	-	4	-	-	4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	-	-	2	2	-	4
	국세청	-	-	-	-	-	-	-
	관세청	-	-	-	-	-	-	-
	조달청	-	-	-	-	-	-	-
	통계청	-	-	-	-	-	-	-
	소 계	-	-	-	2	2	-	4

(단위: 건)

위원회	부처명	시정요구유형						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교육	교육부	-	-	-	-	1	-	1
	국가교육위원회	-	-	-	-	-	-	-
	소 계	-	-	-	-	1	-	1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우주항공청	-	-	-	-	-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1	-	1
	소 계	-	-	-	-	1	-	1
외교통일	외교부	-	-	1	1	-	-	2
	통일부	-	-	-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	-	-	-	-
	재외동포청	-	-	-	-	-	-	-
	소 계	-	-	1	1	-	-	2
국방	국방부	-	-	-	-	-	-	-
	병무청	-	-	-	-	-	-	-
	방위사업청	-	-	-	-	-	-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	-	-	-	-	-
	소 계	-	-	-	-	-	-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	-	-	-	-	-
	경찰청	-	-	-	-	-	-	-
	소방청	-	-	-	-	-	-	-
	인사혁신처	-	-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	-	-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	-	-	-	-	-
	소 계	-	-	-	-	-	-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	1	1	-	-	2
	문화재청	-	-	-	-	-	-	-
	소 계	-	-	1	1	-	-	2

(단위: 건)

위원회	부처명	시정요구유형						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농 립 축 산 식 품 부	-	-	-	-	-	-	-
	농 촌 진 흥 청	-	-	-	-	-	-	-
	산 립 청	-	-	-	-	2	-	2
	해 양 수 산 부	-	-	-	3	1	-	4
	해 양 경 찰 청	-	-	-	-	-	-	-
	소 계	-	-	-	3	3	-	6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산 업 통 상 자 원 부	-	-	-	1	-	-	1
	특 허 청	-	-	-	-	-	-	-
	중 소 벤 처 기 업 부	-	-	-	-	-	-	-
	소 계	-	-	-	1	-	-	1
보건복지	보 건 복 지 부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	-
	질 병 관 리 청	-	-	-	-	-	-	-
	소 계	-	-	-	-	-	-	-
환경노동	환 경 부	-	-	-	-	-	-	-
	기 상 청	-	-	-	-	-	-	-
	고 용 노 동 부	-	-	-	-	-	-	-
	소 계	-	-	-	-	-	-	-
국토교통	국 토 교 통 부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	-	-	-	-
	새 만 금 개 발 청	-	-	-	-	-	-	-
	소 계	-	-	-	-	-	-	-
여성가족	여 성 가 족 부	-	-	-	1	-	-	1
	소 계	-	-	-	1	-	-	1
공 통		-	-	-	-	-	-	-
합 계		-	-	4	15	7	-	26

【붙임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 정 요 구(안)

2024. 11.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국회운영위원회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해당사항 없음)

2. 대통령경호처(3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비비의 특수활동비 배정 문제 및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 작성 문제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1231-301)	시정	대통령경호처
		지적사항	○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경호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는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1231-302)에서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예비비로 특수활동비에 11억원을 배정한 것은 부적절함 ○ 또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가 허위로 작성된 문제가 있음 - 대통령경호처의 예비비 편성은 대통령실 이전과 무관하게 2023년 4월 제기된 도·감청 방지를 위해 편성된 것임 - 그러나 2023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에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 등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예비비 편성” 으로 기재함 -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 작성 시 허위로 작성된 부분을 검토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예비비의 목적 취지에 부합한 세부사업과 비목에 예비비를 배정할 것 ○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결산 및 예산안 법정서류 작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예비비로 편성한 경호보안시스템 사업의 부실 집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호장비시설개선(1231-302)				시정	대통령경호처																				
		지적사항	○ 대통령경호처는 사용시설 증가 및 대도청 강화 등 추가 보안조치 등을 위한 경호보안시스 템 구축을 위해 예비비 75억 6,6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54억 8,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7억 3,700만원을 불용함 ※ 경호보안시스템 강화 관련 예비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 <th>세부사업명</th> <th>배정사유</th> <th>지출결정액</th> <th>지출액</th> <th>이월액</th> <th>불용액</th> </tr> <tr> <td>요인 및 국빈경호활동</td> <td>경호보안</td> <td>1,100</td> <td>1,100</td> <td>-</td> <td>-</td> </tr> <tr> <td>경호장비시설개선</td> <td>시스템 강화</td> <td>7,566</td> <td>1,344</td> <td>5,485</td> <td>737</td> </tr> <tr> <td colspan="2">합 계</td> <td>8,666</td> <td>2,444</td> <td>5,485</td> <td>737</td> </tr> </table> 자료: 대통령경호처 -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대통령경호처는 공사 및 자산 취득 과정에서 대상시설의 지속 사용에 따른 공사 가능 기 간 부족 및 외산 장비 도입에 따른 장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함 - 예비비 배정 신청 시 이와 같은 사유는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해당 연도에 필요한 만큼 예비비로 신청하고 차년도 예산 소요는 차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할 필요 ○ 또한 집행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자료 상 집행부진 사유에 ‘해당 없음’ 이라고 작성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기술한 문제가 있음 ○ 한편 2023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가 허위로 작성된 문제가 있음 - 대통령경호처의 예비비 편성은 대통령실 이전과 무관하게 2023년 4월 제기된 도·감청 방지를 위해 편성된 것임 - 그러나 2023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에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						세부사업명	배정사유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경호보안	1,100	1,100	-	-	경호장비시설개선	시스템 강화	7,566	1,344	5,485	737	합 계	
세부사업명	배정사유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경호보안	1,100	1,100	-	-																							
경호장비시설개선	시스템 강화	7,566	1,344	5,485	737																							
합 계		8,666	2,444	5,485	737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준비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편성 주의 필요		시스템 강화 사업 등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예비비 편성” 으로 기재함 -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 작성 시 허위로 작성된 부분을 검토하지 못 한 책임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예비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1231-309)	주의	대통령경호처
		지적사항	○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는 2022년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 개최 계획안이 심의·의결되었고, 외교부의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사업이 2023년 예산안에 120억원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음에도 예비비로 편성한 문제가 있음 - 아울러 예비비를 통해 경호장비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장비에 대한 소요 필 요성, 향후 활용계획 등이 심의되지 않아 예산 소요의 적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 니함		
		시정요구사항	○ 대통령경호처는 관계 부처와 사전에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소요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비비 편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3. 국회(해당사항 없음)

4. 국가인권위원회(해당사항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법무부(1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비비 사용에 대한 재정운용 원칙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안미영 특별검사(1339-308)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특검은 안미영 특별검사 사업에서 차년도 운영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연말에 예비비를 배정 받아 이월하여 회계연도 독립 및 예비비 이월 최소화 등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2023년도 예산현액 21억 6,500만원 중 14억 6,0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4,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특검은 2023년 12월 28일에 예비비를 배정받았는데, 배정 사유가 2024년도 상반기 운영경비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처음부터 이월을 목적으로 예비비 배정을 신청하였음 -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월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본경비 세부사업이 아닌 동 사업의 경우 이월이 제한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특검은 ‘안미영 특별검사’의 차년도 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도말 예비비 배정을 받았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비비 이월 최소화 등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개선할 것		

- 2. 법제처(해당사항 없음)
- 3. 감사원(해당사항 없음)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해당사항 없음)
- 5. 헌법재판소(해당사항 없음)
- 6. 대법원(해당사항 없음)

정무위원회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4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비비 불용방지를 위한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7035-322)	주의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출범에 따른 운영비 소요 등을 사유로 예비비 6억 5,8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연도 중 지출할 시급성·보충성 및 집행가능성이 결여된 예산을 과다하게 배정받음에 따라 불용(1억 5,800만원)이 발생하였음 - 국외업무여비(220-02목)로 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연도 중 해외 현장방문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전액이 불용되었음 - 공사비(420-03목)로 서울회의실 공사비 4,350만원, 세종사무실 공사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세종사무실 공사비는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사업에서 지출되고, 서울회의실 공사비는 예상보다 적게 소요되는 등 55.3%(2,600만원)가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비비 요구 시 시급성·보충성 및 집행가능성 등 예비비 편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임시조직의 별도 회의장 조성을 위한 예산낭비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7035-322)	주의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서울회의실 조성·원상복구 및 임차를 위해 약 1억 1,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동 위원회는 1년간 운영된 한시조직이라는 점 및 서울회의실의 실사용기간(9개월)을 고려할 때 과다한 측면이 있음 * 약 1억 1,200만원 = 2023년 서울회의실 공사비 2,080만원 + 2024년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회의장 원상복구비 1,562만원 + 10개월분의 임차료 7,574만원 - 서울회의실 조성(2023.7.12.) 전에는 서울청사 회의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 등에서 임차료 집행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 별도 회의장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임시조직의 별도 회의장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예비비 집행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7035-321)	주의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023년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위원회 미구성, 예비비 과다요구·배정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특히, 내역사업인 국가위원회 운영사업과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7.8%, 18.4%에 불과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지출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불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4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7035-321)	주의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2022년 12월부터 국가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 업무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국가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2억 4,250만원(57.9%) 집행된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것 ○ 국무조정실은 향후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사전에 추진할 것		

2. 국가보훈부(해당사항 없음)
3. 공정거래위원회(해당사항 없음)
4. 금융위원회(해당사항 없음)
5. 국민권익위원회(해당사항 없음)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해당사항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1. 기획재정부(4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1331-305)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현장 간담회(90회) 외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성과를 알기 어렵고, 수출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의 업무중복 해소 여부 등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측정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것		
2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 및 적절한 성과측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1331-306)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사업을 위한 정책연구비의 전액 불용 및 일반수용비 예산의 전용·불용, 홍보비 과다 집행 등 예산을 예비비로 급하게 편성·집행하여 계획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도 어려움 - 주요 사업인 관계 부처·연구기관·업계·학계 등과의 협업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비 3,000만원 전액 불용 및 일반수용비 예산 1억 7,200만원 중 6,400만원을 신성장 4.0 전략 관련 홍보 및 공모전·시상식 개최 등 계약 추진 위해 일반용역비로 전용하였음에도 5,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향후 홍보에 치중하기보다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적절하고 구체적인 성과측정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관련 예비비 불용액 과다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조세개혁추진단 운영(2131-310)	주의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예비비로 편성된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예산이 과다 불용됨 - 예산현액 13억 8,700만원 중 87.8%(12억 1,800만원)가 불용되었으며, 특히 일반수용비 97.3%(7억 7,100만원), 일반연구비 및 정책연구비 67.7%(1억 300만원)가 불용 - 조세개혁추진단은 2023년 2월 신설되었으나, 인력구성(2023년 4~5월) 및 조세개혁 관련 연구용역 지연 등으로 과다한 집행부진이 발생		
		시정요구 사항	○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과 같은 중대한 사항은 시급성을 요하는 예비비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본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타당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확정 후 시행할 것 ○ 기획재정부는 임시조직이 구성된 이후 신속하게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타부처 협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임시조직에 대한 예비비 배정 시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예비비(3069-300)					주의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기획재정부는 2023회계연도 임시조직을 위한 예비비 32억 8,300만원을 배정받아 15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단위: 백만원) <table>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6">2023</th> </tr> <tr> <th>예산액 (A)</th> <th>이·전용 등(C)</th> <th>예산현액 (A+B+C)</th> <th>집행액</th> <th>다음 연도 이월액</th> <th>불용액</th> </tr> <tr> <td>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td> <td>-</td> <td>-</td> <td>781</td> <td>715</td> <td>-</td> <td>66</td> </tr> <tr> <td>조세개혁추진단 운영</td> <td>-</td> <td>-</td> <td>1,387</td> <td>119</td> <td>50</td> <td>1,218</td> </tr> <tr> <td>신성장전략기획추 진단 운영</td> <td>-</td> <td>-</td> <td>377</td> <td>257</td> <td>-</td> <td>120</td> </tr> <tr> <td>금융투자지원단 운영</td> <td>-</td> <td>-</td> <td>738</td> <td>439</td> <td>-</td> <td>298</td> </tr> <tr> <td>합계</td> <td>-</td> <td>-</td> <td>3,283</td> <td>1,530</td> <td>50</td> <td>1,702</td> </tr> </table> - 전체 예비비 집행률은 93.9%에 달하나 기획재정부의 예비비 집행률은 50% 이하로, 예비비 배정의 원칙 중 하나인 집행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측면							구 분	2023						예산액 (A)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	-	781	715	-	66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	-	1,387	119	50	1,218	신성장전략기획추 진단 운영	-	-	377	257	-	120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	-	738	439	-	298	합계	-	-	3,283	1,530	50	1,702
		구 분	2023																																																						
예산액 (A)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	-	781	715	-	66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	-	1,387	119	50	1,218																																																			
신성장전략기획추 진단 운영	-	-	377	257	-	120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	-	738	439	-	298																																																			
합계	-	-	3,283	1,530	50	1,702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집행 실적이 다른 부처 대비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비비 배정에 있어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할 것																																																								

2. 국세청(해당사항 없음)

3. 관세청(해당사항 없음)

4. 조달청(해당사항 없음)

5. 통계청(해당사항 없음)

교육위원회

1. 교육부(1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영유아보육료 편성 대비 과다 집행에 따른 예산편성 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영유아보육료 지원(3133-331)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2020~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보육료 지원대상이 당초 예산편성 인원 대비 실제 지급인원을 초과하여 예산액 3조 251억 4,500만원 외 2023년 예비비 1,383억원을 편성하였음 ○ 예비비 배정사유는 2023년 보육시설 이용자 수가 당초 예상 인원 대비 49,000명 증가하였기 때문임 - 현재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예산편성 시 전전년도 실적만을 사용하여 보육료 지급 대상인원을 추계하고 있으며, 연도별 보육료 증가율은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임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보육료 지급대상의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2023년 예비비 1,383억원을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최근 3년간 보육료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할 것		

2. 국가교육위원회(해당사항 없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당사항 없음)

2. 방송통신위원회(해당사항 없음)

3. 원자력안전위원회(1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비 예비비 집행의 부적절 및 신속분석에 대한 신뢰성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2031-401)	제도개선	원자력 안전위원회
		지적사항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비 해양환경 방사능 감시 확대 관련 신속분석이라는 명목으로 예비비(25억 500만원)를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였음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하여 미리 충분히 본예산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 에도 회계연도 중에 예비비를 추가 배정하여 집행하였는 바, 이는 국회의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로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해야 할 예비비의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비 해양환경 방사능 감시 확대와 관련한 예비비의 부적절한 집행 등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비 해양환경 방사능 감시 확대 관련 신속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할 것		

4. 우주항공청(해당사항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1. 외교부(2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연례적 예비비 사용 및 예비비 과다 배정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								시정	외교부																																																																										
		지적사항	○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및 2023년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사용한 문제가 있음. ※ 2018~2023년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이·전용 등</th><th rowspan="2">예비비</th><th rowspan="2">예산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tr><th>본예산</th><th>추경</th></tr><tr><td>2018</td><td>19,608</td><td>19,608</td><td>5</td><td>-</td><td>6,385</td><td>25,998</td><td>24,644</td><td>703</td><td>651</td></tr><tr><td>2019</td><td>23,301</td><td>23,301</td><td>703</td><td>-</td><td>1,589</td><td>25,593</td><td>23,475</td><td>-</td><td>2,118</td></tr><tr><td>2020</td><td>21,191</td><td>11,191</td><td>-</td><td>△7,000</td><td>-</td><td>4,191</td><td>1,941</td><td>-</td><td>2,250</td></tr><tr><td>2021</td><td>22,502</td><td>22,502</td><td>-</td><td>-</td><td>-</td><td>22,502</td><td>19,283</td><td>709</td><td>2,510</td></tr><tr><td>2022</td><td>20,472</td><td>20,443</td><td>709</td><td>-</td><td>6,308</td><td>27,460</td><td>26,199</td><td>71</td><td>1,190</td></tr><tr><td>2023</td><td>24,868</td><td>24,868</td><td>71</td><td>-</td><td>32,859</td><td>57,798</td><td>53,094</td><td>1,071</td><td>3,633</td></tr></table>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8	19,608	19,608	5	-	6,385	25,998	24,644	703	651	2019	23,301	23,301	703	-	1,589	25,593	23,475	-	2,118	2020	21,191	11,191	-	△7,000	-	4,191	1,941	-	2,250	2021	22,502	22,502	-	-	-	22,502	19,283	709	2,510	2022	20,472	20,443	709	-	6,308	27,460	26,199	71	1,190	2023	24,868	24,868	71	-	32,859	57,798	53,094	1,071	3,633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8	19,608	19,608	5	-	6,385	25,998	24,644	703	651																																																																													
2019	23,301	23,301	703	-	1,589	25,593	23,475	-	2,118																																																																													
2020	21,191	11,191	-	△7,000	-	4,191	1,941	-	2,250																																																																													
2021	22,502	22,502	-	-	-	22,502	19,283	709	2,510																																																																													
2022	20,472	20,443	709	-	6,308	27,460	26,199	71	1,190																																																																													
2023	24,868	24,868	71	-	32,859	57,798	53,094	1,071	3,633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예비비 규모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도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예비비 과다 배정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1432-403),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231-421)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2023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및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회의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비 사용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배정된 예비비 중 상당액이 이월 및 불용됨 ※ 2023년도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7">2023년</th><th rowspan="2">2024년 예산액</th></tr><tr><th>예산액 (A)</th><th>전년도 이월액 (B)</th><th>예비비 (C)</th><th>예산 현액 (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tr><td>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td><td>-</td><td>-</td><td>4,896</td><td>4,896</td><td>3,023</td><td>947</td><td>926</td><td>34,739</td></tr><tr><td>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td><td>-</td><td>-</td><td>2,820</td><td>2,820</td><td>322</td><td>2,004</td><td>494</td><td>4,377</td></tr></table>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비비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	-	4,896	4,896	3,023	947	926	34,739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	-	2,820	2,820	322	2,004	494	4,377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비비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	-	4,896	4,896	3,023	947	926	34,739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	-	2,820	2,820	322	2,004	494	4,377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과도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비비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 및 집행에 주의할 것																																													

2. 통일부(해당사항 없음)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해당사항 없음)

4. 재외동포청(해당사항 없음)

국방위원회

1. 국방부(해당사항 없음)
2. 병무청(해당사항 없음)
3. 방위사업청(해당사항 없음)
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해당사항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1. 행정안전부(해당사항 없음)
2. 경찰청(해당사항 없음)
3. 소방청(해당사항 없음)
4. 인사혁신처(해당사항 없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사항 없음)
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해당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문화체육관광부(2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산 전용 및 집행 등에 있어 관련 법령 취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1231-303), 콘텐츠국 기본경비(7112-252)	시정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POP 슈퍼라이브’ 행사의 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관계 법령 위반 및 위탁기관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집행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 - 예비비 요청 및 예산 전용 등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행사가 개최되었음 - 동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추진되었으나 콘서트 개최 등 행사개최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국립민속박물관·국립국악원·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등 K-POP 콘서트와 연관성이 적은 사업에서 예산 전용을 실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8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와 연계한 K-POP 콘서트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29억 9,700만원을 예비비(16억 6,000만원)와 예산 전용(13억 3,700만원)을 통해 편성하였음 ※ 콘서트 개최(8.11)→기획재정부에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요청(9.11)→예산 전용 확정(9.12)→1차 지출(9.15)→예비비 배정(9.22)→2차 지출(9.25)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POP 콘서트 개최를 긴급 집행하면서 「국가재정법」 등 예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고, 위탁기관의 위탁범위를 벗어난 집행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과다한 예비비집행 지양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미디어홍보(3131-302)	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현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도 ‘순방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과도한 예비비를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였음 - 2023년 ‘순방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예비비 76억 2,700만원, 이·전용을 통해 4억 9,800만원 등 총 8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회 심사·확정액 47억 4,000만원의 2배로서 과도한 집행임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비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는 한편,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을 자제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것		

2. 국가유산청(해당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농림축산식품부(해당사항 없음)
2. 농촌진흥청(해당사항 없음)

3. 산림청(2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긴급벌채 사업의 연례적 이·전용 및 예비비를 통한 예산집행과 예비비 과다편성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목재생산관리(1540-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긴급벌채’는 매년 예산액이 부족하여 예비비 편성 및 이·전용을 통해 집행하고 있고, 예비비를 과다하게 배정받아 실집행을 부진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예비비 비율은 2019년 0%, 2020년 2,847.8%, 2021년 0%, 2022년 3,285.0%, 2023년 651.3%로, 2019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본예산 대비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한 측면 - 최근 5년간 지자체 교부액 대비 집행잔액(불용액) 비율은 2019년 3.1%, 2020년 4.4%, 2021년 10.5%, 2022년 23.5%, 2023년 53.8%로 급증하는 추세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긴급벌채 사업의 최근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긴급벌채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의 면밀한 검토 및 산주 동의 여부를 예비비 요구에 앞서 미리 확인하는 등 예비비 추산의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산불진화헬기 임차도입 사업의 임차비용 추산의 정확도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림헬기 도입·운영(1936-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은 해외에서 대형헬기 5대, 중형헬기 2대의 임차를 위해 예비비 369억 3,700만원을 배정받았다가 그 중 114억원(예비비의 30%)을 불용처리한바, 예비비를 과다하게 배정받은 측면이 있음 - 산림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KA-32 헬기 부품 수급이 어려워 2024년도에 15대 헬기의 가동 중단 및 산불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해외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하였으나, 가동 중단이 예상되는 러시아산 KA-32 헬기 수량을 과다 추계함으로써 미 집행액이 과다 발생 - 2023년도 말 기준, 산불진화헬기(총 48대) 중 러시아산 기종은 총 20대(60.4%)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산림헬기 예비부품 활용 및 기관 간 부품 유통을 감안하여 가동할 수 있는 헬기의 수량에 대한 정확한 추산을 통해 헬기 임차비용을 적정수준으로 산출하고, 해외 임차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		

4. 해양수산부(4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수산물 위생관리사업에 배정된 예비비의 집행을 저조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물 위생관리(3041-303)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수산부는 예비비 59억원을 배정받아 양식장 생산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검사하는 사업인 ‘수산물 위생관리(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방사능검사필증 지원 예산의 집행이 저조하여 배정된 예비비 중 29억원(49%)을 집행하고 6억 4,500만원 (10.9%)을 불용함 - 수산물 위생관리(유해물질안전관리강화-방사능검사필증지원) 사업은 안전 수산물을 증명하기 위해 양식장에 대해 방사능 검사필증을 교부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배정된 예비비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비비의 집행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2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의 효과분석 미흡 및 연례적 예비비 지출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3044-34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수산물 가격할인이 가격상승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없이 2022년과 2023년 각각 200억원, 942억 7,900만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었음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온·오프라인 업체,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전용상품권 발급, 업체할인 지원 등을 통해 가격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이 시장 및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증하고, 예비비 배정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수산물 품질관리사업에 배정된 예비비 집행을 저조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물품질관리(3045-301)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수산부는 예비비 9억 6,100만원을 배정받아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주요 위판장 등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였으나, 배정된 예비비 중 7억 4,300만원(77%)을 집행하고 2억 1,800만원(23%)을 불용함 - 수산물 품질관리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운영, 수산물 안전성조사, 수산식품 인증제 운영,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원산지 표시 조사 및 주요 위판장 방사능 검사에 배정된 예비비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비비의 집행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4	예비비 사업에서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3040-317)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수산부는 예비비 59억 9,500만원을 배정받아 ‘산지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을 신규 추진했으나, 수요조사 부실, 사업타당성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의 추진이 중단되거나 그 실적이 저조하여 배정된 예비비 중 23억 6,400만원(39.4%)을 불용하였음 - 산지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은 산지위판장 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분석,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를 배정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해양경찰청(해당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산업통상자원부(1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비비 연말 교부 후 전액 이월 부적정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3574-306)	주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적사항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2월 29일 예비비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요소수급안정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 22억 6,500만원을 교부하여 전액 이월함 - 2024년 5월까지 7억 1,100만원을 실집행함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은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로 예비비 편성 요건에 ‘집행가능성’을 추가하여 예비비의 집행관리를 강조한 바 있음 ○ 중국의 예고없는 요소 수출통제에 따른 국민적 혼란과 우려를 고려해 연말에 예비비를 편성한 불가피성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자원부는 예비비 편성 요건 중 하나인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준수하고, 향후 연말 예비비로 보조금을 편성·교부하여 전액 이월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는 예비비 편성 사업의 보조금 규모를 좀 더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산정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		

2. 특허청(해당사항 없음)

3. 중소벤처기업부(해당사항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 보건복지부(해당사항 없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해당사항 없음)
3. 질병청(해당사항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1. 환경부(해당사항 없음)
2. 기상청(해당사항 없음)
3. 고용노동부(해당사항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1. 국토교통부(해당사항 없음)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해당사항 없음)
3. 새만금개발청(해당사항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1. 여성가족부(48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비비 과다 배정 및 일부 예비비 집행내역 부적절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소년 국제교류지원(2254-542)	주의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예산의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예비비로 배정한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음 - 폭염대비 물품과 의료물자 지원을 위한 예비비 실집행률이 33.2%에 불과, 조직위원회 결산 결과 2023년 12월 말 기준 47억 6,700만원의 국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23년 본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할 예산의 일부를 예비비에 포함하는 등 일부 예비비 집행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예비비 신청서상 세부내역별 산출근거 및 집행내역을 보면, 잼버리 참가자 급식 확대 및 간식 추가제공, 냉동생수·얼음·아이스크림 구입, 청소도구 구입, 가로 조명 추가 등 행사 운영 관련 지원으로 보이는 내역도 같이 포함됨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추후 국제적 행사시 계획 수립, 운영 과정과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방만한 예산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 관리를 할 것		

공통사항

1. 공통(해당사항 없음)